

울산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19가합123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류강

담당변호사 이주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

담당변호사 이명률, 박재용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철, 류한빈

변 론 종 결 2021. 6. 24.

판 결 선 고 2021. 8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. 1. 체결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E일자 C와 사이에 F을 출산한 후 홀로 양육하였다. 피고는 C와 1989. 9. 27. 혼인하였고, 2016. 8. 10. 협의 이혼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7. 11. 24. C를 상대로 F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(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7242호 사건)를 제기하였고, 2018. 10. 15. ① F이 C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, ② F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, ③ C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8,000만 원을, 장래 양육비로 2018. 11. 30.부터 F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.

다. C는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피고 명의 부동산인 울산 북구 G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D 양정대리점(울산)을 운영하다 피고와 이혼한 이후인 2018. 1. 1.경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었고, 이후 피고가 2018. 1. 22.경 계약보증금 5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고, 위 대리점의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11, 1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는 원고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채무가 있음에도, 2018. 1. 1.경 유일하게 가진 재산인 D 대리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, 위 대리점 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을 초래하였다. C와 피고 사이의 위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갑 제10,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가 피고 명의 건물에서 주식회사 D 양정대리점(울산)을 운영하다 2018. 1. 1. 위 대리점의 사업자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미수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실, 그 이후 피고가 별도로 주식회사 D에게 계약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위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행행위로서, C와 피고 사이에 위 대리점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, 위 채권양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철웅, 판사 정의철 공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, 재판장, 판 사, 판사 김아름